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
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박운기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박운기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「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」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